

이 지침은 소독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7판
(2023. 6. 9.)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I. 개요	1
1. 법적 근거	1
2. 목적 및 적용 범위	1
3. 개념 정의	2
II. 소독시 주의사항	3
1. 일반 원칙	3
2. 소독 전 준비사항	4
3. 소독 시 주의사항	5
4. 소독 후 주의사항	5
III. 환경 청소 및 소독	7
1. 청소·소독 방법	7
2. 세탁물 관리	9
[붙임]	11
1.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11
서식 1. 방역조치 관련 서식	12
서식 2. 소독 증명서	13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14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15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18
5. 일상 소독 방법(예시)	19
6. 코로나19 관련 차량의 청소·소독	20
7.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21
8. 자주 묻는 질문	23
[부록]	
(환경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발췌)	34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구분	개정사항
4	개정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중 공기소독 금지 및 의미 명확화, 관련 법령 명시
6	개정	○ [소독과 관련된 주요 고려 사항] 중 공기소독 금지 및 의미 명확화, 관련 법령 명시
8	개정	○ 공기소독 금지 및 의미 명확화, 관련 법령 명시
26~	개정	○ 자주 묻는 질문 Q12 공기소독 금지 및 의미 명확화, 관련 법령 명시 Q16 문구 수정 Q17 공기소독 금지 및 의미 명확화, 관련 법령 명시 Q25 공기소독 금지 및 의미 명확화, 관련 법령 명시

I 개요

1. 법적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제1호가목에 따라 ‘제2급감염병’에 해당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오염된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점검 시행

☞ 참고자료 [붙임 1]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2. 목적 및 적용 범위

- (목적)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전파 차단
- (주요 내용) 소독의 개념과 효과, 소독 시 주의사항, 올바른 소독방법 등 소독관련 중요 정보 제공
- (적용 상황)

① (환자 이용 장소 방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한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② (일상적 예방)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주택 등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 ▶ 의료기관의 소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참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
- ▶ 일상적 예방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붙임 5] 일상 소독 방법(예시)” 참조

3. 개념 정의

- (청소(세척), Cleaning▶)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참조

- (소독, Disinfection▶)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짐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참조

- 청소 및 소독의 효과

-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면 표면과 물체에 있는 감염성 병원체가 불활성화되지는 않으나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 감소
- 소독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더욱 감소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물체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전파경로 및 생존 기간]

- ① (전파경로)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음
- ② (생존 기간) 특정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 (참고문헌)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The Lancet Microbe 2020 Apr 10.1016/S2666-5247(20)30003

II 소독 시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수립) 시설관리자는 일상 소독 및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및 접촉이 잦은 공간 및 물체 표면 대상 소독시행▶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직원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방법 등 교육
 - 직원은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증상)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 (소독 도구) 가능한 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환기) 소독 전, 중, 후 등 충분히 환기하여 실내 공기 중의 감염원 및 소독제 유해성분 배출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저하되므로 소독 전에 표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붙임 7]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참조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

2. 소독 전 준비사항

- (소독 도구 준비) 소독제, 물,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대걸레 등

▶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 시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등을 착용하고, 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을 추가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환경소독제 선택)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
▶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https://ecolife.m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 검색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7)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 ④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
-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
 -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참조
-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3. 소독 시 주의사항

-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참조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교체 순서 참고) 장갑 제거 → 손소독 → 마스크 제거 → 손소독 → 새 마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소독 시 체크리스트(예시)】	
<input type="checkbox"/>	소독 범위 설정 - 접촉이 잦은 표면, 확진자 또는 의심자 이동 동선 등
<input type="checkbox"/>	소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input type="checkbox"/>	환경부 승인·신고된 소독 제품 사용
<input type="checkbox"/>	소독제 라벨에 표시된 제조사 사용법 준수 (유효농도, 접촉시간 등)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및 청소용품 준비
<input type="checkbox"/>	소독 전, 눈에 보이는 오염된 표면을 물과 세제(또는 비누)로 청소 실시
<input type="checkbox"/>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실시
<input type="checkbox"/>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기
<input type="checkbox"/>	충분한 환기 실시

[소독과 관련된 주요 고려 사항]

- ①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
- ② 실외 공간(거리, 시장 등)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기타 병원균 사멸을 위해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는 방법 금지(소독제는 유기물에 의해 불활성화되어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므로, 우선적으로 먼지, 오물 등 유기물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아닌 곳은 효과가 떨어짐)
- ③ 소독 터널, 캐비닛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
 - 병원체의 비말전파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④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의 표면소독 방법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음

[관련근거]

-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 (15 November 2021)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 ▶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nvironmental surfa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Ⅲ 환경 청소 및 소독

-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필요
- ▶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청소·소독 방법

- (사전 준비)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등급)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 보호구 착용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청소·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포장하여 다른 사람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 소독제의 선택과 준비
 - 환경소독제는 공인된 기관(환경부 등)의 승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여 소독제 농도, 적용시간, 유효기간 등을 준수
 - 희석한 소독제의 경우 보관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희석 소독제의 오염을 예방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환경소독제 관련 상세내용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

▶ 소독제 정보: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코로나19 살균” 검색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05% (5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mL의 원액을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을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을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 x 0.05 ÷ 5 = 5ml

- (소독 전 처리) 표면이 이물질(유기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유의사항]

- ①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폐기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고
- ② 소독제를 적신 천(헝겂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 또는 일회용 타올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 또는 일회용 타올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소독제 종류에 따라 권고되는 소독액 접촉시간에 따름

[소독 부위(예시)]

-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조명 조절 장치,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 업무 공간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등

-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

- **(바닥 청소·소독)** 병원균의 분무 발생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보다는 청소용액이나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 소독제에 적신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후에는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고,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청소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청소 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대걸레는 매일 아침 또는 기관 규정에 따라 교체하며, 오염물이 많은 표면을 소독한 후에는 바로 교체
 - 바닥 소독 또는 표면 소독에 사용한 일회용 걸레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소독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청소·소독 후 순서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제거하고 손을 씻는다. 필요시 샤워한다.

2. 세탁물 관리

- **(보호구)**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는 재사용해서는 안됨

▶ 일회용은 반드시 사용 후 폐기

○ (세탁물 이동)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옮길 때에는 흔들거나 터는 등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지 말 것

- 세탁물 운반에 사용하는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 등은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재사용 할 경우 소독 후 사용

○ (세탁 방법)

①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
-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②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

○ (건조) 세탁 후 완전히 말릴 것

- ▶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직물의 경우 폐기

-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류 등 린넨물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준수

[올바른 소독방법 콘텐츠 활용 안내]

콘텐츠

- | |
|---------------------------------|
| ①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 |
| ②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 |
| ③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 |
| ④ [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 |

[다운로드]

- ① (카드뉴스) 기관홈페이지(www.k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카드뉴스 "소독" 검색
- ② (영상) 기관홈페이지(www.k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영상자료 "소독" 검색

붙임 1

소독 관련 법적 근거 및 조치 사항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 제2항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감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및 별표 5·별표 6

: 코로나19는 '제2급감염병'이므로 법령에서 제시하지 않은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본 지침을 준수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제1항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 제1항제13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소독명령)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

▶ 시설명,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관련서식** [서식 1] 방역조치 관련 서식

○ (소독이행) 소독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감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소독의 방법” 중 제5호 소독약품의 사용에 의한 소독을 시행해야 함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 대행자에게 소독시행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서식 2.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관련서식** [서식 2] 소독증명서

서식 1

방역조치 관련 서식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명령서**

해당 시설	명칭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이행기간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2020. . . . 00:00 ~2020. . . . 00:00
명령대상	범위	시설 전체			시설 일부 (범위 한정 시 구체적으로 기재)	
준수사항	<p>환자 이용 공간(구역)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한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하루정도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호(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제2호(의료기관 업무정지), 제5호(소독)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을 명합니다.</p>						
<p>년 월 일</p>						
<p>○○○ 보건소장 (관인생략)</p>						
<p>유의사항</p>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해당 장소 사용가능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다중 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시설 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3회 이상 시행 ○ 환자 퇴실 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후 시간당 6회 환기 조건에서 최소 1시간 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참조
의료기관 (의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환자(의심되는 경우 포함)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 		
의료기관 (응급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p>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p>	<p>2.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3. 가운을 입는다.</p>		
				
<p>4. 마스크를 착용한다.</p>	<p>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p>	<p>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p>		
				
<p>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p>				<p>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p>

□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p>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p>		<p>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p>		<p>4.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p>	<p>6.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7. 마스크를 제거한다.</p>		
				
<p>8. 손 위생을 시행한다.</p>	<p>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p>			

□ 손 위생(hand hygiene) 방법

①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콜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누를 이용한 경우 30초 이상 손 씻기



1. 청소·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방수성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한다.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하여 희석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1,000ppm 희석액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더러운 표면은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5.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6.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7.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고온에서 섬유세탁용 살균제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60°C이하에서 사용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적절하게 소독액으로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또는 어려울 경우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9.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10.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붙임 5

일상 소독 방법(예시)

1.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제 희석액을 만든다.

준비물

-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
- 500ml 페트병(잘 씻고 건조한 병), 계량컵
- 종이타올
- 종량제봉투(버리기 쉽도록 쓰레기통에 씌워놓기)
- 일회용장갑, 고무장갑, 마스크 및 방수앞치마 등
- * 일반 표면소독은 500ppm, 화장실은 1,000ppm 권장



▶ 5% 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을 사용하여 0.1%(10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만드는 경우



· 5% 원액 10mL을 페트병에 붓는다.

· 찬물을 더해 500mL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섞는다.

2. 환기를 하면서 자주 접촉하는 장소, 화장실 표면을 소독한다.



변기



수도꼭지



침대난간



전화기



문고리, 창틀 등



컴퓨터, 마우스

그림출처: www.cloroprofessional.com

▶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



· 소독약을 적신 종이타월로 닦은 후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한 후 물을 적신 종이타월로 닦는다.

· 사용한 일회용 도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독액을 부린 후 밀폐시켜 처리한다.

3. 충분히 환기 시킨다.

4. 청소·소독 후에는 보호구를 제거하고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한다.

[주의사항]

- ▶ 문 손잡이 및 화장실과 같이 자주 닿는 표면의 경우 가정에서는 하루 1회 이상, 공공 장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하루 1회 이상 소독(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더 자주 소독)
- ▶ 표면이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소독 전에 세제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

1. 차량에서 흔히 접하는 표면을 깨끗이 소독한다.
2. 적절한 환기 제공을 포함하여 세척 및 소독 절차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준수한다.
3. 차량 청소시 문과 창문이 열어야 한다.
4. 소독안내 지침에 따라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필요한 다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가능한 경우 일회용 가운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5. 차량 내부의 단단한 비 다공성 표면(예 : 단단한 시트, 팔걸이, 도어 핸들, 시트 벨트 버클, 조명 및 공기 조절 장치, 도어 및 창, 손잡이)은 특히 더러워져 있으면 표면에 비누와 물로 청소 후 소독한다.
 - 소독은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사용하며 적용 및 적절한 환기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설명서를 따르며 제품의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 만약 해당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알콜(에탄올 70%이상)을 사용하며 이때 다른 세척제와 혼합하지 않는다.
6. 직물 시트와 같은 부드럽고 다공성인 표면의 경우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해당 표면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적절한 클리너로 청소한 후 다공성 표면에 적합하고 환경부의 승인·신고 소독제를 사용한다.
7. 차량에 사용되는 태블릿 또는 터치스크린과 같이 자주 접촉하는 전자기기 표면의 경우 눈에 띄는 먼지를 제거한 다음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청소·소독하며 설명서가 없는 경우 알코올을 함유한 물티슈 또는 알콜(에탄올 70%이상)을 사용하여 소독한다.
8. 차량 청소 및 소독에 사용되는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청소 후 제거 및 폐기해야한다.
 - 방수용 장갑 또는 개인보호구를 탈의한 후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거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 일회용 방수용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청소 및 소독 시 착용 한 작업복/의복은 소독안내 III. 환경 청소 및 소독, 2. 세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탁해야하며 세탁물 취급 후 비누와 물로 즉시 손을 씻는다.

붙임 7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 사항

□ 효과

-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의 주성분)은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박테리아, 곰팡이 및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적인 강력한 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효과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여 널리 사용됨
 - 따라서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환경 소독에 권장
- (단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점막, 피부 및 기도를 자극하고 열과 빛에서 분해되어 다른 화학 물질과 쉽게 반응하므로 주의해서 사용
 - 잘못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음
 - 과도하게 사용하면 환경 오염 위험이 있음

□ 도구 및 장비

- 가정용 차아염소산나트륨, 계량 도구, 용기 및 개인보호구와 같은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장비 준비

□ 희석액 준비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하고 사용
- 점막, 피부 및 기도를 자극하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액 제조 및 사용시 적절한 개인 보호구(예 : 방수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를 착용
- 뜨거운 물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활성 성분을 분해하여 소독효과가 없게 되므로 희석 시 냉수 사용
- 상황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올바르게 희석하여 사용

- ▶ 일반적인 가정용 청소 및 소독 : 500~1000ppm
- ▶ 환자 이용 공간 및 구토·배설물·분비물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 1,000ppm
- ▶ 환자 혈액·체액 유출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 : 5,000ppm

유효염소농도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최종 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물 혼합 비율	
		4% (40,000ppm) 원액	5% (50,000ppm) 원액
500 ppm	0.05%	1:80	1:100
1,000 ppm	0.1%	1:40	1:50
5,000 ppm	0.5%	1:8	1:10

- 차아염소산나트륨 첨가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계량스푼 또는 계량컵을 사용
- 소독 후 비누와 물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 금속, 양모, 나일론, 실크, 염색 된 직물 및 페인트 표면에 사용 금지
- 희석액이 묻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기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15분 이상 행구고 의사와 상담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다른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섞지 말 것

-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화장실 청소용에 사용되는 산성 세제와 혼합하면 독성 가스가 생성되어 사고나 부상 발생
- ▶ 필요한 경우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기 전에 세제를 먼저 사용하고 물로 철저히 행굼

- 희석되지 않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햇빛에 노출 될 때 유독 가스를 방출하므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므로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에 생산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입

- ▶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가 증가하므로 제조 후 24 시간 이내에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사용 후 잔량은 폐기함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효과가 저하되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기 전에 표면의 유기물을 깨끗이 제거해야함

붙임 8

자주 묻는 질문

Q1.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말을 할 때 배출되는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비말은 비교적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 않고 물체의 표면에 가라앉습니다.
- 아직 가라앉지 않은 공기 중의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무의식적으로 물체의 표면에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만진 손으로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코로나19)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체외로 배출되면 얼마나 생존하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두 가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2일,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에서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가 사용한 공간의 경우 주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고 표면 및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Q3. 청소와 소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세제(또는 비누)와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제거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 소독은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병원체를 죽이는 것으로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Q4. 청소와 소독으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 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는 세균을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하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소독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짜 사멸하나요?

- WHO, 미국CDC 등의 정보에 따르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 MERS-CoV 등 과거에 밝혀진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소독제 효능을 시험한 결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및 알코올(70% 에탄올) 등에서도 소독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가의 환경부처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승인한 제품 및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유효성분을 유효농도이상 함유하는 환경부 신고 제품을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 중의 잠재적인 코로나19 감염원 소독을 위해서는, 선택한 소독제의 제조사 제공 사용법이 분무/분사방식으로 안내되었을지라도, 에어로졸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체 표면 소독시에는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권고합니다.

Q6. 손씻기의 효과가 있나요?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7. 집을 소독한 경우 집을 비워야 하나요?

- 환자가 거주한 집을 소독할 때에 소독이 필요한 공간은 비워야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면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을 마친 후 다음날까지 충분히 환기한 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Q8.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온 적이 있는 학교, 사업체, 지역사회 시설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해도 안전하나요?

- 미국CDC에 따르면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동안 코로나19 유발 바이러스인 SARS-CoV-2가 전염 또는 확산할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공청소기와 관련된 코로나19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방문한 학교, 사업체, 지역사회 시설에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환기한 후 청소·소독하기를 권고합니다.
- 다음 권장사항은 청소 소독 후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때 작업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카펫을 해당 구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진공 청소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가능하면 고효율 미립자 공기(HEPA) 필터를 갖춘 진공청소기를 사용합니다.
 - 사람이 있는 방이나 공간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지 않습니다. 공용 공간의 경우에는 그 공간이 비었을 때 진공청소기를 사용합니다.
 - 실내 환기구, 방 또는 공간에 제공되는 중앙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꺼서 진공청소기에서 빠져 나오는 입자가 시설 전체로 순환되지 않도록 합니다.

Q9. 일상 청소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입니다.
-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회사나 다중이용시설은 소독을 위해 얼마나 오래 폐쇄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이 복귀해 근무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회사에 다녀갔다고 해서 회사 건물 전체를 반드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사용이 확인된 회사 내 공간은 소독을 위해 일시적인 폐쇄를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여 폐쇄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합니다.
- 소독을 위해 폐쇄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문과 창문을 최대한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 해당 구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는 직원들은 소독 완료 후 즉시 근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Q11.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12. 환경소독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은 제품 내 ‘표시 사항’에 신고·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 시에는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https://ecolife.me.go.kr>) 공지사항 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서 목록을 확인한 후 (신고·승인 번호 확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합니다.
 - 또한 소독업자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방역용 소독제만 써야합니다. 신고된 살균제,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 허가받은 의약품, 동물용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합니다.

Q13.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집을 소독하는 동안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해야 하나요?

- 집을 소독할 때 일회용 장갑 및 보건용 마스크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 및 소독제의 자극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에는 얼굴, 눈, 코 및 입을 만지지 말고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후에는 장갑을 벗고 버려야하며,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은 후에 새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되면 즉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Q14. 오염된 표면에 소독제를 얼마나 오래 접촉시켜야 하나요?

- 접촉 시간은 소독제가 바이러스와 접촉하여 상당수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소독제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참조

Q15. 피부에 가정용 락스와 같은 소독제가 닿으면 피부 자극을 유발하나요?

- 소독제의 노출 영향은 사용하는 소독제의 원료물질, 농도, 노출 기간 및 사용된 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접촉 부위에 부종, 염증 및 발작 등 피부 및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독성도 있습니다.
-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갑, 앞치마 등 필요한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제품별 사용량,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설명서의 사용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붙임 기],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및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16. '환경 표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집을 청소하고 소독할 때 구역과 물건을 집중적으로 소독해야 하나요?

- 환경 표면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주택 내의 물체 표면입니다. 여기에는 바닥, 벽, 블라인드, 테이블, 주방 상판 및 가구와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문 손잡이, 팔걸이, 좌석 등받이, 테이블, 키보드,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집중하여 소독합니다.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표면도 소독해야 합니다.

Q17.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 하나요?

- 예. 세탁 가능한 직물인 침대 시트, 베개 커버, 담요 및 기타 직물은 세탁기에 넣고 세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세탁하십시오(본문 III. 환경 청소 및 소독 중 2. 세탁방법 참조).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Q18. 집에 반려동물 (개, 고양이 등)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나요? 그리고 소독 작업을 수행할 때 반려동물을 멀리해야 하나요?

- 지금까지,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은 소독된 표면에 미생물을 유입시킬 수 있으므로 소독 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접촉 전후에는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살균제, 살충제 등)은 「약사법」 상 의약품·의약외품(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임

Q19. 집 소독에 사용한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비투과성 청소 장비(예, 양동이 막대걸레의 막대, 플라스틱)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독제로 완전히 소독(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30분 이상 침적)하고 재사용하기 전에 건조시켜야합니다.
- 사용된 모든 천과 폐기물은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을 참조하여 처리합니다.

Q20.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행로나 도로를 소독해야 하나요?

- 미국CDC에 따르면 보행로나 도로 소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행로나 도로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것은 소독제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며, 대중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은 매우 낮으며 소독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Q2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나 공원, 실외 놀이터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나요?

- 실외 지역은 일반적으로 일상 청소가 필요하며 소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외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효율적인 소독 방법이 아니고 대중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실외 지역에 대한 기존 청소 및 위생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Q22.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UV), LED 청색광과 같은 대체 소독 방법은 얼마나 효과적 인가요?

- WHO에 따르면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照射)하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합니다.

- 미국CDC에 따르면 초음파, 고강도 UV,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청(EPA)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고 파악된 표면 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내에서는 현재 살균·소독용 방역 장비의 경우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 있으나 소독 효능 인증 기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만 충족하는 제품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출입구에 살균 터널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미국CDC에 따르면 살균 터널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 또한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Q24.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도 소독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에서 장난감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 특히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물건에는 삼키면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25. 실내 공간의 공기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나요?

- 실내 공간에서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는 흡입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시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용도(표면소독 등)에 맞게 용량·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 적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Q26.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제가 있나요?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7.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한가요?

- 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물건 소독, 인체·식기 등 소독, 동물 소독 등)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몸에 직접 바르거나 식기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Q28. 야외 공간을 소독해도 되나요?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실외 소독 시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Q29.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 (소독시 보호장비)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 후 조치)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영유아 등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② 공간(공기) 소독은 자제,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 ④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문헌

1.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MOH Pandemic Readiness and Response Plan for Influenza and other Acute Respiratory Diseases. (revised April 2014)
2. World Health Organization(2019).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Novel Coronavirus (nCoV) Infection is Suspected. WHO/2019-nCoV/IPC/v2020.1.25.
3.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How to Put On and Take Of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vailable from :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putontakeoffPPE/en>)
4.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2008).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updated May 2019)(Available from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guidelines/disinfection>)
5. Ministry of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Singapore(2014). Interim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Areas Exposed to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 Non-Healthcare Premises.(Revised on 16 August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nea.gov.sg/our-services/public-cleanliness/environmental-cleaning-guidelines/guidelines-for-environmental-cleaning-and-disinfection>)
6. Public Health England(2020). Guidance COVID-19: decontamination in non-healthcare settings (Published 26 March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COVID-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
7. Taiw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Responsive guidelines : Community management Maintenance (Published 4 March 2020).
「嚴重特殊傳染性肺炎(武漢肺炎)」因應指引：社區管理維護--1090304修訂.pdf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tw/File/Get/9G_tJC4fy3OcIWSD8P4CQ)
8. Austr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Environmental cleaning and disinfection principles for COVID-19 (10/03/2020). (Available from : <https://www.health.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3/environmental-cleaning-and-disinfection-principles-for-covid-19.pdf>)
9.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 Community Facilities with Suspected/Confirmed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Cleaning and Disinfection Recommendations for Community Facilities. (Revised 26 March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cleaning-disinfection.html>)

10.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 Households with Suspected or Confirmed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Cleaning and Disinfection for Household. (Revised 26 March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cleaning-disinfection.html>)
11. ECDC. Interim guidance for environmental cleaning in non-healthcare facilities exposed to SARS-CoV-2(18 Feb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ecdc.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coronavirus-SARS-CoV-2-guidance-environmental-cleaning-non-healthcare-facilities.pdf>)
12. Health and Safety Executive(UK). Methods of decontamination-blood borne-viruses(BBV) (Published 19 July 2019) (Available from : <https://www.hse.gov.uk/biosafety/blood-borne-viruses/methods-of-decontamination.html>)
13. ECDC technical report(2020). Disinfection of environments in healthcare and non-health care settings potentially contaminated with SARS-CoV-2(Mar 2020)
14.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Water, sanitation, hygiene, and waste management for the COVID-19 virus. WHO(29 July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who.int/publications-detail/water-sanitation-hygiene-and-waste-management-for-covid-19>)
15.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Reopening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ng Public Spaces, Workplaces, Businesses, Schools, and Homes(28 April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reopen-guidance.html>)
16.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Home (02 April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sinfecting-your-home.html>)
17.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Cleaning And Disinfection for Non-emergency Transport Vehicles (14 April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organizations/disinfecting-transport-vehicles.html>)
18.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ng (28 July 2020)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ReOpening_America_Cleaning_Disinfection_Decision_Tool.pdf)

19.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dvise for the public: Myth busters. (Available from :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myth-busters>)
20.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environmental surfa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15 May 2020 (Available from :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32096>)
21. EPA, Ventilation and Coronavirus(COVID-19), <https://www.epa.gov/coronavirus/ventilation-and-coronavirus-covid-19>
2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 (15 November 2021) (Available from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발취

-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발취 내용임
- ◆ 전체본은 환경부(me.go.kr)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폐기물 안전관리” 검색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23.1.1 시행)

-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분류 및 처리
- 다만, 배출자 분류, 코로나19 격리태그 사용, 소독 강화 등 유지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

	(현행)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6판)	(변경) 폐기물관리법
분 류	○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분류 강화 ¹⁾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타 감염병과 동일 기준 적용 ※ 격리환자 잔반은 소독 후 생활 폐기물로 처리 등
배출자 보관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냉장보관 원칙	○ 7일까지 보관가능 ○ 합성수지 전용용기 사용 * 전용용기 밀폐전 용기 내부, 외부 반출전 용기 외부 약물소독 ○ 전용 보관창고 (조직물류 형태는 냉장보관)
운 반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²⁾ ○ 사용시 마다 차량 약물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처 리	○ 당일 소각처리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통계관리 등을 위해 **코로나19 임시코드는 유지**

2) 당일운반 관련 수집·운반업체 비용지원 종료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자 구분) 소방서, 생활치료센터 등 임시배출자 권한 유지 ○ (폐기물 분류) 자가진단키트(RAT), PCR, 보호장비 등 코로나19 진단 시 사용된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소독 후 처리 ※ 다만, 코로나19 양성·음성환자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경우에만 한하여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 가능 ○ (기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보관 시 매일 1회 이상 소독
-------	--

가. 발생 및 보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준수**

- (배출)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 투입(시설내 이동 최소화) 후 밀폐**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 내부, 처리하기 위해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 소독
단, 폐기물태그는 **코로나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구분하여 부착

※ 의료진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보호복)와 같이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격리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보관) 배출자는 폐기물 법정 보관기간 준수(**코로나격리의료 7일, 일반의료 15일**)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
 -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약물소독**
 -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나.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되, 임시보관창고 매일 1회 이상 소독**
 - ※ 처리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